국세청

WWW.NTS.GO.KR

부가가치세법

집필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전 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배 영 섭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한 근

문의사항

(044) 204-3117~19

2023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WWW.NTS.GO.KR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88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289
3.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290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 291
5.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293
6.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 294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295
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296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297
10.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298
1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 299
12.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300
1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 301
1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302

주요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 간이과세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2024.12.31.)

○ 자료제출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2024.7.1.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에누리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판매장려금으로 착오하고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9194호) : 2022.12.3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71호) : 2023.2.28.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73호) : 2023.3.20. 공포

국세청
www.nts.go.kr/kor

0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좌 동)
○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11장)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 §42②)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①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③ 보정신청 통지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④ 수입거래 사항 서류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kor

03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항목 추가
○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❶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좌 동)
❷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❹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❺ ❶~❹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⑼

국세청
WWW.NTS.GO.KR

종 전	개 정
○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좌 동)
〈신 설〉	○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명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05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가. 개정취지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좌 동)
〈추 가〉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금액) 2천만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06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 「국세징수법」 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민사집행법」 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좌 동)
〈추 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❶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❷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0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좌 동)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좌 동)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 (신청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좌 동)
○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10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중개거래와 주선·중개 아닌 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로 한정)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추가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좌 동)
〈추 가〉	③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12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좌 동)
〈추 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좌 동)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

1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이자율	▢ 이자율 상향 조정
○ 연 1.2%	○ 연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